

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0가단625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3. 4. 3 선고 2022나12039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0가단62534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철

변 론 종 결 2022. 1. 11.

판 결 선 고 2022. 4.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의, 2022.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6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벽돌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 채취,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 C은 D이라는 상호로 피고와 거래를 해 오다가 2017. 2. 13. 원고의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0. 2. 10.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중순경부터 2018. 5. 7.경까지 피고로부터 혼합석, 석분, 마사토, 모래 등(이하 ‘이 사건 골재 등’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 등의 대금으로 1,975,678,200원(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과일 값 625,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은 1,982,236,300원인데 원고가 2,011,454,6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차액 상당액 29,218,350원(= 2,011,454,650원 - 1,982,236,3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은 원고가 인정하는 1,982,236,300원 외에 2018. 12. 27.자 세금계산서 관련 조경토 대금 36,614,500원²⁾, 2017. 12. 4.자 세금계산서 관련 41,149,000원, 2017. 10. 23.자 세금계산서 관련 차액 2,728만 원, 2017. 11. 8.자 세금계산서 관련 차액 3,872,000원(= 86,345,600원 - 82,473,600원), 2017. 12. 3.자 세금계산서 관련 차액 429,000원(= 92,296,600원 - 91,867,600), 2017. 12. 18.자 세금계산서 관련 차액 2,992,000원(= 92,752,000원 - 89,760,000원) 등 합계 2,094,572,800원³⁾ 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으로 1,982,236,3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112,336,500원(= 2,094,572,800원 - 1,982,236,300원)⁴⁾ 과 관련하여, 2018. 12. 27. 발행된 세금계산서 관련 채권액 중 36,614,500원의 존부, 2017. 12.경 발생한 모래대금채권 41,149,000원의 존부, 2017. 10. 23., 2017. 11. 8., 2017. 12. 3., 2017. 12. 18. 각 발행된 세금계산서 관련 채권액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2018. 12. 27.자 세금계산서 관련 조경토 대금 36,614,500원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 제22호증의 1, 제23호증의 1, 제24호증, 을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 11 내지 19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1. 화순항에 도착한 조경토 2,600㎥를 포함한 조경토 3,621㎥(단가 11,538원, 총 금액 41,779,098원, 이하 ‘이 사건 조경토’라고 한다) 중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처분한 조경토를 제외한 나머지 조경토 대금 36,614,500원 상당의 채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골재 등을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조경토 및 이 사건

조경토와 함께 처리된 토사대금 650만 원 외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누락한 거래가 없다.

(2) 이 사건 조경토는 그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고는 2017. 5. 1.경은 물론이고 2018. 12. 27.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조경토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원고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7. 5. 1.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조경토를 H회사에 납품하였으나 H회사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경토가 반품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조경토를 각자 처분할 수 있는 곳에 처분하여 각 손실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경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직원 I가 작성한 작업로그(을 제19호증, 이하 ‘이 사건 작업로그’라고 한다)에 다른 거래들은 물량에 단가를 곱한 대금이 합계액으로, 합계액과 화물비용의 차액이 손익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조경토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물량에 단가를 곱한 총 금액 41,779,098원에서 하역비 525만 원 및 기타 비용 1,27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49,098원이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임 2,470만 원을 공제한 ‘-950,902원’이 손익란에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조경토 거래를 손실로 처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5) 피고는 2017. 7.경 G에, 원고는 2018. 8.경 J회사, K회사 등에 이 사건 조경토 중 일부를 각 처분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경토를 처분한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7. 12. 4.자 세금계산서 관련 41,149,000원

피고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근거로 들고 있는 거래장부(을 제7호증)에도 ‘대략 41,14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채권의 발생원인 및 금액산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7, 8호증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41,149,000원을 미지급액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7. 10. 23.자 세금계산서 관련 차액 2,728만 원

L가 임의로 선박운임을 제외하고 110,654,500원으로 금액을 수정한 2017. 10. 30.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거나 2017. 10. 23.자 세금계산서 137,934,500원과의 차액인 2,728만 원(= 137,934,500원 - 110,654,500원) 상당의 운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2017. 11. 8.자, 2017. 12. 3.자, 2017. 12. 18.자 각 세금계산서 관련 차액 L가 임의로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2017. 11. 8.자 86,345,600원, 2017. 12. 3.자 92,296,600원, 2017. 12. 18.자 92,752,000원)을 수정한 세금계산서(2017. 11. 8.자 82,473,600원, 2017. 12. 4.자 91,867,600원, 2017. 12. 18.자 89,760,000원)를 발행하였다거나 수정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닌 수정 전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각 차액인 3,872,000원(= 86,345,600원 - 82,473,600원), 429,000원(= 92,296,600원 - 91,867,600), 2,992,000원(= 92,752,000원 - 89,76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골재 등 대금 채권액은 1,982,236,300원이다.

나. 변제하거나 공제된 돈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으로 지급하였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 2,011,504,65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1,975,678,200원(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과일 값 625,000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M(이하 '㈜ M'이라고 한다)에 지급한 선박운임 2,376만 원, 주식회사 N(이하 '㈜ N'이라고 한다)에 공급한 모래대금 6,479,550원 및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에 공급한 모래대금 5,911,400원을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 M에 지급한 선박운임 2,376만 원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M은

2017. 9. 11. P를 이용하여 광양 울촌에서 제주 화순으로 모래 등을 운반하였고 원고가 2017. 9.

12. (주) M에게 모래 및 석분 2,700㎥의 운송료로 2,376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9. 12. Q 주식회사(이하 'Q (주)'라고만 한다)에게 모래 및 석분 합계 2,700㎥를 판매하고 같은 달 14. Q (주)로부터 대금 71,335,000원을 받은 사실, 피고 거래장부(을 제7호증) 중 2017. 9. 29. 이후 2017. 10. 16. 사이 기간의 원고 입금액 부분에 'M 운임비 2,376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받을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에서 위 돈 상당액을 공제하고 계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 M에 지급한 2,376만 원은 피고가 Q (주)에 판매한 모래 등의 운송료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운송료를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에서 2,376만 원이 변제되었거나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주) N, O (주)에 각 납품한 모래대금 상당액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7. 11. 16. (주) N에 6,479,550원 상당의, 2017. 11. 23.경 O (주)에 5,911,400원 상당의 각 모래를 가져다주고 피고에게 갖는 모래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골재 등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 제26호증의 1, 제29호증, 제31호증의 1, 2, 제32호증의 1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골재 등 대금 1,982,236,3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975,678,200원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박운임채권 2,376만 원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은 초과 지급된 돈에 해당한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사건 골재 등 대금 1,982,236,300원에서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975,678,200원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박운임채권 2,376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17,201,900원(= 1,982,236,300원 - 1,975,678,200원 - 2,376만 원)을 초과로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201,9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인 2022.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최종변제일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1) 원고는 2020.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부당이득이 29,268,350원인 것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였으나, 2021. 3. 15.자 준비서면에서 부당이득액을 29,218,350원으로 정리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27.자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52,007,007원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토사금액 605만 원을 제외한 조경토 3,621㎡ 상당의 대금 45,957,007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다가, 2021. 1. 6.자 준비서면에서 36,614,500원으로 감축하였다.

3)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골재 등 총 대금을 2,103,915,307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중 2018. 12. 27.자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45,957,007원에서 36,614,500원으로 감축하여 총 대금도 2,094,572,800원이 되었다.

4) 피고는 2018. 12. 27.자 세금계산서 관련 36,614,500원, 2017. 12. 모래대금채권 관련 41,149,000원, 2017. 10. 23.자 세금계산서 관련 27,280,000원, 2017. 11. 8.자 세금계산서 관련 3,872,000원, 2017. 12. 3.자 세금계산서 관련 429,000원, 2017. 12. 18. 세금계산서 관련

2,992,000원 합계 121,679,000원(= 45,957,007원 + 41,149,000원 + 27,280,000원 +
3,872,000원 + 429,000원 + 2,992,000원)을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보다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